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곽규택・주진우・김희정

이헌승 • 조경태 • 백종헌

김대식 • 박성훈 • 조승환

서지영 • 이성권 • 정성국

정동만 · 김도읍 · 박수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 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를 "8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한다.

3의2. 해사법원

제5조제2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법원"을 각각 "해사법원 또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을 "고등법원의 사무국장, 특허법원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허법원"을 각각 "특허법원·해사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의4제2호"를 "제28조의4제2호

또는 제28조의7제1항제2호"로, "특허법원"을 "특허법원 또는 해사법 원"으로 한다.

제3편에 제2장의2(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해사법원

제28조의5(해사법원장) ① 해사법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

- 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6(부) ① 해사법원에 부를 둔다.
- 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 나.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 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③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은 "해사법원"으로 본다.
-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해사법원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되어 온 경우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 중 "특허법원장"을 "특허법원장, 해사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u>7종류</u> 로 한다.	<u>8종류</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 3</u> 의2. 해사법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 <u>특허법원</u> ·지방	③ <u>특허법원·해사</u>
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	법원
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	
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 <u>특허법원</u> ·지방	② <u>특허법원·해사</u>
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법 <u>원</u>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제6조(직무대리) ①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 <u>특허법원</u> ·지방법원·가정법	특허법원·해사법원
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생략)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u>행정법원</u>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u>행정법원</u>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⑤ (생략)
-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u>특허법원</u>・지방법원・가정법
 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 ② (생 략)
-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u>특허법원</u>·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특허법원·해사</u>
<u>법원</u>
<u>해사법원 또는 행정</u>
<u>법원해사법</u>
<u> 원 또는 행정법원</u>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판사회의) ①
<u>특허법원·해사법원</u>
<u>특허법원·해사법원</u>
<u>특허법원·해사법원</u>
<u>특허법원·해사법원</u>
 ② (현행과 같음)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局)을 둘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 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 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제호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u>특</u> 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의 사무국장, 특허
법원의 사무국장, 해사법원의
사무국장
④ (현행과 같음)
∥14조(심판권)

1 <u>특허</u>
법원·해사법원

걹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 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생략)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제28조(심판권) ------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 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특허법원·해사법원</u>---3. (현행과 같음)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 조의4제2호 또는 제28조의7제1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항제2호----특허법원 또 는 해사법원----. 제2장의2 해사법원 제28조의5(해사법원장) ① 해사법

원에 해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

다.

- ③ 해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 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 ④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 제28조의6(부) ① 해사법원에 부 를 둔다.
 - ②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 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

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
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

한다)

나.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

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건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
부장관 및 해양경비안전본
부장(이하 "해사행정청"이
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

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 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 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 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 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 로 심판한다.

<신 설>

제44조(보직) ① (생 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③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 법」상 "행정법원"은 "해사법 원"으로 본다.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제28조의7에 규정 된 해사사건과 관련되는 소송 으로서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 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 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 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 런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이를 해사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다.

② 해사소송의 당사자는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해사법원은 다른 법원 으로부터 관련청구소송이 이송 되어 온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특허법원장, 해사법원장-----

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